

第14回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臨時會)

#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附錄)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 目 次

- 1. 大邱直轄市達西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制定條例案 .....24面
- 2. 第1次達西發展5個年計劃樹立에따른經過報告 .....28面

## 大邱直轄市達西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制定條例案

###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세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면제 하고자 함.

###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9조

※ 세정 22670-544 (92. 7. 21)호로 제정조례 준칙 시달로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 3. 주요골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종교 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4. 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기타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법** 법률 제4269호 (90. 12. 31)

제 7 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 9 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의료법** 법률 제4430호 (91. 12. 14)

제 30 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제 31 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자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민 법 법률 제4199호 (90. 1. 13)

제 32 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사교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면제대상

1992. 7. 31 현재 면제대상 종교단체 없음.